

#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4. 17  
시민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4. 1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 4. 10.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2.4.1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가.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우리구 관할구역내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재원에 융자상환금 및 보조금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재원중 구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재구성 하고,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 (3) 위원은 생활복지국장과 산업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 (4) 구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산업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음.

○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 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의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육성법을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서울시 관련 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 통일성을 기 하도록 개정하였음.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에서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였는 바, 이는 우리구 관할구역내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 조례 제정('93.7.24)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은 2001년 말 현재 증식이자 포함 총 6,313백만원을 조성하여 119개 업체, 12,015백만원(융자금 회수 시 타 업체에 재지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구출연금은 없으나 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약 3,000백만원을 조성하여 30여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에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이 개정조례 제2조4호중 수도권외의 범위는 ?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관내 일원임.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세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명시되어 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이 개정조례는 우리구 관내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함. 융자금의 이율은 ?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현재 6%에서 4%로 하향되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확정금리 인가 변동금리 인가 ?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확정금리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이 개정조례는 매우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구 관내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그렇게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4.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우리구 관할구역내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 개정골자

-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조성 재원에 융자상환금 및 보조금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재원중 구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재구성 하고,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 (3) 위원은 생활복지국장과 산업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 (4) 구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기금의 용자절차 및 용자한도액과 용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마.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3. 근거법령

- (1)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제6115호)제8조,제9조 및 제133조
- (2) 중소기업기본법(1998.2.28 법률제5529호) 제3조
-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2002. 1.26 법률 제6641호)제43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 (1)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조례와의 상충여부 등 검토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2. 3.15 ~ 4. 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2002.4.1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운전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용자하거나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상공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자대상자의 선정

2. 용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산업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구의원인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위생과 상공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업위생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

⑤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②기금의 용자절차 및 용자한도액과 용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의 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하였거나 용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